

관광진흥법 시행령

<목 차>

1. 여행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 일부 개정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문화체육관광부	작 성 자	이름	한송희
	담당부서 (과)	관광기반과		직급	행정주사
	국장	김현환		연락처	044-203-2840
	과장	최현승		이메일	van1770@korea.kr

정책책임자직위

성명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여행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		
	2.규제조문	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아목 및 도목		
	3.위임법령	관광진흥법 제9조, 제35조		
	4.유형	개정	5.입법예고	2019.5.13.~6.21.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○ 여행업자가 고의로 폐업한 경우 여행객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행업 행정처분 등록취소 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등록취소 소요기간 단축		
	7.규제내용	○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을 4회차 처분에서 2회차로 단축 - 여행업자가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		
	8.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○ 피규제자: 여행업자 ○ 이해관계자: 국민(관광객)		
	9.규제목표	국민(관광객) 권익 보호 강화		
규제의 적정성	10.영향평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
	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	11.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해당없음		
기타	12.일몰설정 여부	해당없음		
	13.원칙허용·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	해당없음		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별표 2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행정처분의 기준 (제33조제1항 관련)</p> <p>1. 일반기준 (생략) 2. 개별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 반 사 항</th> <th rowspan="2">근거법 령</th> <th colspan="4">행 정 처 분 기 준</th> </tr> <tr> <th>1차</th> <th>2차</th> <th>3차</th> <th>4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. ~ 노.(생략) 도.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(여행업자만 해당한다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 제35조 제1항 제20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 명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업 정지 10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업 정지 20 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취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 반 사 항	근거법 령	행 정 처 분 기 준				1차	2차	3차	4차	가. ~ 노.(생략) 도.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(여행업자만 해당한다)	법 제35조 제1항 제20호	시정 명령	사업 정지 10일	사업 정지 20 일	취소	<p>별표 2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행정처분의 기준 (제33조제1항 관련)</p> <p>1. 일반기준 (현행과 같음) 2. 개별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 반 사 항</th> <th rowspan="2">근거법 령</th> <th colspan="4">행 정 처 분 기 준</th> </tr> <tr> <th>1차</th> <th>2차</th> <th>3차</th> <th>4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. ~ 노.(생략) 도.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(여행업자만 해당한다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 제35조 제1항 제20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정 명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취소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 반 사 항	근거법 령	행 정 처 분 기 준				1차	2차	3차	4차	가. ~ 노.(생략) 도.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(여행업자만 해당한다)	법 제35조 제1항 제20호	시정 명령	취소		
위 반 사 항			근거법 령	행 정 처 분 기 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차	2차		3차	4차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~ 노.(생략) 도.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(여행업자만 해당한다)	법 제35조 제1항 제20호	시정 명령	사업 정지 10일	사업 정지 20 일	취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반 사 항	근거법 령	행 정 처 분 기 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차	2차	3차	4차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~ 노.(생략) 도.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(여행업자만 해당한다)	법 제35조 제1항 제20호	시정 명령	취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여행업자가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*, 보증보험(공제)을 통해 관광객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등록취소 처리하여야 하는데, 현행 4회차의 행정처분을 완료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국민에게 불편이 큰 점을 해소하고자 함
- *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으나 여행업자가 고의로 폐업하여 여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(여행일정 등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등은 제외)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법적 근거
 -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: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·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- 20.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(여행업자만 해당한다)
- 최근 여행업자가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하고 도주하여 국민(관광객)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- 2018. 9월: 여행업 소비자 보호 유관기관 회의 개최
 - 참석자: 한국관광공사, 한국소비자원, 한국관광협회중앙회, 한국여행업협회
 - 의견수렴 결과: 관광객 보호적 규제 강화 필요, 여행업계 건전화 및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일부 규제 강화 필요

3. 규제목표

- 국민(여행객) 권익 보호 강화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여행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 강화
 - 목적: 관광객 피해 시 신속하게 구제
 - 수단: 고의적 여행계약 위반 시 등록취소 기준을 4회차 처분에서 2회차로 단축
- ☞ 관광객 보호적 규제로서 피해 구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반 사항을 선택하여 타당성을 갖춘 규제 설정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일몰설정 여부	원칙허용· 예외금지
기술	경쟁	중기			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○ 영향평가

-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

① 규제 영역	경영활동
② 규제 방식	기준규제(명령, 조사, 단속 등)
③ 예비분석모델	예비분석표모델
판단 근거	규제 대상 집단이 단일업종 내에 있는 바, 단일업종에 대한 예비분석표 활용
④ 대상 업종	여행업
⑤ 예비분석내용	① 기업 규모별 규제부담비율 파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 규모별 본포 및 규모별 매출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체 여행업 대비 종업원 10인 미만 소비업 비율: 92.6% - 전체 여행업 대비 소기업 매출액 비율: 49.3% - 소기업 대비 100인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: 12.1% ② 지표값을 이용한 차등화 점수: 3점

<지표값을 이용한 차등화 점수 확인>				
	지표값	비율	차등화 점수	
	① 전체 대비 소기업 업체 수 비율	55% 미만	3	
	② 전체 대비 소기업 매출액 비율	40% 이상	0	
	③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	30 미만	0	
③ 차등화 대상 결정: 차등화 불확실(△)				
<규제 차등화 예비분석표>				
	지표값 총점	사업전환/승계/폐업		
		신고	기준설정	허가
	3	△	△	△
⑥ 차등화적용 여부	차등화 불확실(△)			

○ 기타 고려사항

- 일몰설정 여부: 해당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: 해당없음

Ⅲ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자 의무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

○ 규제 차등화 방안: 해당없음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: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행업 등록 등 관리중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: 해당없음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2018년 탑항공, 홈쇼핑 입점 여행사 등 여행업계 파산으로 인한 여행객 피해가 증가하여 국민과 언론의 관심 집중
 - 여행공제회 및 서울보증보험 피해보상 현황
(‘18.9월 기준) 40개 여행사, 피해 청구액 14억원/보상액 11억원
(‘17년) 41개 여행사, 피해 청구액 20억원/보상액 10억원
 - ‘18년 여행불편처리센터 신고 민원 1,691건/한국소비자원 접수 민원의 40%가 여행사 부도 관련
- ‘18.9월 “여행업 소비자 보호 유관기관 회의”를 운영하며 국민 (관광객) 권익 보호와 여행업계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등록취소 기준 일부 규정 강화 결정

2. 향후 평가계획

- 매년 실시하는 여행업 행정처분 현황, 여행불편처리센터 운영 현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조치할 계획

3. 종합결론

- 관광객 피해 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여행업 등록취소 기준 일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